



제427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정당 당원 경력 삭제〉

■ 강준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211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병 섭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정당 당원 경력 삭제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준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17.
3. 회 부 일 : 2025. 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별도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음.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미 법관의 과거 경력이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고, 심급제도에 의한 상급심의 재판과 합의제도에 대한 다른 법관들의 관여로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함.

헌법재판소 또한 과거 3년 이내 단순 당원 경력까지 법관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음(2021헌마460).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과거 3년 이내 정당의 당원 경력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제5호 삭제).

III. 검토의견

1.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정당 당원 경력 삭제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의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 4. (생략) 5.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u>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u> 6. · 7. (생략) ② (생략)	제43조(결격사유)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u><삭제></u> 6.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법원조직법」 제43조¹⁾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제1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제2호),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3호),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4호),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제5호),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제6호),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제7호)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음.

- 법관의 임용 결격사유 중 제5호 사유인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1) 「법원조직법」 제4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아니한 사람”은 2020. 3. 24. 법률 개정(법률 제17125호, 2020. 9. 25. 시행)에 따라 신설되었음.

-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법원조직법」(2020. 3. 24. 법률 제1712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제1항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법관(대법원장·대법관·판사)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법관의 정당가입 및 정치운동 관여 금지, 임기 보장, 탄핵제도, 제척·기피·회피제도, 심급제 등)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헌재 2024. 7. 18. 2021헌마460).

- 개정안은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과거 3년 이내 정당의 당원 경력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²⁾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조직법(2020. 3. 24. 법률 제1712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제1항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조문 정비 차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법원조직법」(2020. 3. 24. 법률 제1712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제1항제5호 전체를 삭제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정당의 당원인 사람’에 관한 부분까지 법관의 임용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국가공무원(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과 국회의원 보좌관 등 별정직 공무원 제외)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³⁾ 및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⁴⁾에 따라 국가공무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4)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

원인 법관의 신분과 정당의 당원 신분은 동시에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법상 ‘정당의 당원’이라는 요건이 국가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

다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⁵⁾, 국가인권위원회 위원⁶⁾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용의 결격사유⁷⁾에는 ‘정당의 당원’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검사 임용⁸⁾ 결격사유에는 ‘정당의 당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 5) 「국가공무원법」 제10조의2(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②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 7)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 8)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따라서 제안 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과거 3년 이내 정당의 당원 경력을 삭제하려는 입법 취지와 함께 국가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및 유사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 관계기관 의견

- 법원행정처는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국민의 공무담임권 보호 필요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 제고 필요성 등을 비교형량함으로써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헌법재판소는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음(2021헌마460).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정당의 당원” 부분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이 법관을 포함한 직업공무원은 재직 중 정당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정하고(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법원조직법이 법관은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등으로(법원조직법 제49조제3호) 법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071